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
자진정비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(2차)
공시송달 공고(시천동 112-2)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 등 규정을 위반한 무단점유물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2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1항(대집행의 절차)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행위(소유)자 성명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8. 10.



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

1. 공고명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(2차) 공시송달 공고 (시천동 112-2)
2. 공고기간: 2026. 8. 10. ~ 2026. 8. 31. (21일)
3. 공고대상 및 내역: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대집행 방법
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천동 112-2	무단점유물 일체 (건축 판넬 등 일체)	자체 집행 (철거)

4. 송달할 서류의 종류: 행정대집행 계고서(별첨)
5. 공고 및 게시장소: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홈페이지,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
6. 문의 :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도로과 (☎ 032-726-7072)